	모노			됴	•포용적 금융	
금융위원회	보도	2020.2.3.(월) 조긴	ļ	배포	2020.1.31.(금)	• 신뢰받는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		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861)	
	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고 광 희(044-215-2710)				신 채 용 사무관 (044-215-2718)	
	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이 형 렬(044-215-7610)		FL FL 71		심 수 현 사무관 (044-215-7613)	
	기재부 출자관리과장 조 현 진(044-215-5170)			·L +1	서 병 괸 (044-215	
	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장 김 홍 주(044-203-4360)		담 당 자		김 수 진 서기관 (044-203-4365)	
	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 김 영 진(02-787-6901)				곽 효 ⁴ (02-787	
	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김 인 태(02-729-7310)				이 낙 구 팀장 (02-729-6565)	
		입은행 여신총괄부장 정 수(02-3779-6261)			장 웅 식 팀장 (02-3779-6264)	

•생산적 금융

제 목 : 2.10일부터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「설비투자 붐업(Boom-up) 프로그램」이 출시됩니다. [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]

- 2020년중 산은·기은·수은은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총 4.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.
- 산은・기은・수은은 국내 중소・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총 4.5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
- 동 특별자금대출은 금년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지원되며, 최저 1.5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

(다만, 금리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)

1. 경 과

- □ 정부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「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신설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.(2020년 경제정책방향('19.12월))
 - → 「2020년 경제정책방향」의 후속조치로, 2.10일부터 산은・기은・ 수은은 「설비투자 붐업(Boom-up) 프로그램」을 출시합니다.

※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

• 운영기간 : 1년간 한시 운영

• 지원대상 : 중소・중견기업 신・증설 투자

• 대출만기 : 최대 15년

• 금리 : 최저 1.5%의 특별우대금리 적용(단,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)

- 2. 「설비투자 붐업(Boom-up) 프로그램」 주요내용 (☞별첨 : 상세내용)
- □ 산은・기은・수은은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총 4.5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
- □ 금번 특별 정책자금은 금년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지원되며, 최저 1.5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
 (다만, 금리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)
 - ※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·시장 차입금리,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
- □ **대출실행 이후**에도, 지속적 사후 관리 등을 통해 **시설투자**가 계획대로 **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**할 계획입니다.

3. 기대 효과

- □ 금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·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"경기반등의 모멘텀"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* 총 4.5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지원은 '20년 중소·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 40.3조원(설비투자 계획조사(산은))의 11.2%에 해당



「설비투자 붐업(Boom-up) 프로그램」세부내용

- < 지원 방향 > -

- ◇ 국내 중소・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(산・기・수은)이 저금리 정책금융(시설자금 대출) 지원(4.5조원)
- ◇ 금년중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분에 대해, 최저 1.5% 금리 적용 (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)
 - ※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·시장 차입금리,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
- ◇ 특례금리가 지원되는 만큼, 투자계획서 제출·투자여부 등 지속적 관리 등 엄격한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
- □ (운영기간) '20년 한시적으로 운영
- □ (지원대상) 국내에 소재한 중소・중견기업
- □ (자금용도)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신·충설 시설투자 (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)
 - ※ ①기존시설 유지·보수 ②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 ③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④기존대출 대환 등 용도는 지원 불가
 - ※ 수출입은행은 동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지원
 - ①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(예정)받은 기업의 시설투자
 - ② 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
 - ③ 소재・부품・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

□ (금리) '20년 기표된 대출에 대해 '24년말까지 최저 1.5% 적용 (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)
※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・시장 차입금리,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
① (기표기준) '20년도 내 투자가 이루어져 기표가 이루어진 대출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(최저 1.5%) 적용
② (적용시한) '24년말까지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 (최저 1.5%)를 적용하고, '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
□ (지원규모) 최대 4.5조원 (산은 2.0조원 + 기은 2.0조원 + 수은 0.5조원)
□ (대출만기) 최대 15년
□ (도덕적해이 방지)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, 대출심사 ・시설투자 관리・회수 등 全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
○ (대출심사)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*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출 *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점검가능한 시설투자 이행계획(시점별) 등 명시
○ (사후관리) 주기적(예 : 분기별)으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,
- 제출된 사업계획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 되었거나, 투자 外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원금회수 등 조치
□ (재원) 정책금융기관의 '19년도 내부 유보이익 활용